

#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2. 2.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2. 5.

다. 상 정 일 자 :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2. 16. 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감사관 장병순)

### 가. 제안이유

- 갑질 행위 정의에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을 추가하고 갑질 허위신고 조항을 삭제하여 갑질 사각지대를 없애고, 갑질조사위원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을 변경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갑질행위 정의 추가 (안 제2조 신설)
- 갑질조사위원회 위원 구성변경 (안 제6조 개정)
- 갑질 허위신고에 대한 조항 삭제 (안 제14조 삭제)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건)

-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갑질 유형 범위 확대 및 갑질 신고 의지를 위축시키는 조항 삭제를 통해 갑질 사각지대를 없애고, 조사위원회 위촉직 외부인원을 명확히 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갑질 근절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화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2. 2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2. 5

다. 상 정 일 자 :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2. 16. 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정책기획과장 유운호)

### 가. 제안이유

- 100만 대도시로서 시정 조정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시정조정위원회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당연직 위원 구성에 행정기구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당연직 위원 등 위원회의 구성 수정(안 제2조)
- 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2 신설)
- 위원회 개최 요일 및 자료 제출·배부에 관한 사항 삭제, 서면 의결에 대한 조건 신설(안 제4조)
- 운영세칙의 결정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7조 신설)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건)

- 시정조정위원회의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범위와 위원장의 직무와 대행에 관한 사항 및 서면 의결의 조건 등을 명확히 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와 조문의 배치를 정비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화성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2. 2.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2. 5.

다. 상 정 일 자 :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2. 16. 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정책기획과장 유운호)

### 가. 제안이유

- 화성시정연구원을 화성시의 시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시 전반에 대한 연구, 데이터 구축, 화성학 연구 등 포괄적인 명칭인 화성시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화성시정연구원” 을 “화성시연구원” 으로 변경  
(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제1항)
- “시정관련” , “시정발전” 을 “화성시 관련” , “시 발전” 으로 변경  
(안 제1조, 제3조제1호 및 제5호).
- “화성시정연구원육성기금” 을 “화성시연구원육성기금” 으로 변경  
(안 제5조제1항)
- “화성시정연구원장” 을 “화성시연구원장” 으로 변경(안 제5조제3항)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건)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기관의 명칭 변경을 통하여 시정뿐만 아니라 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와 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화성시의 중장기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화성시와 경상북도 영양군 간 우호도시 협약체결 사전 동의안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2. 2.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2. 5.

다. 상 정 일 자 :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2. 16. 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행정지원과장 엄태희)

### 가. 제안이유

- 화성시와 경상북도 영양군 간 우호도시 협정 체결을 위하여 「화성시 국  
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화성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협정체결 필요성

- 가) 경상북도 동북부 태백산맥 내륙에 위치한 영양군은 풍부한 문화유적이  
보존되어 있고 반딧불이 서식하는 청정지역으로 유명
- 나) 교류를 통해 서로의 우수시책을 공유하고 양 도시 간 상생·발전할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 구축
- 다) 양 자치단체 간 우호도시 협정을 통해 행정, 경제, 교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공동 발전 및  
우호 증진 도모

#### ○ 협정체결 주요 내용

「양 도시 간 이해와 우의 증진을 위한 상호주의 교류협력에 대한 합의」

- 가) 상호 간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행정, 문화, 교육, 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 사업 추진
- 나) 양 도시 간 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해 문화유산, 생태자원, 인적자원 등  
교류에 적극 협조
- 다) 상호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교류사업 발굴 및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진)

- 경상북도 영양군은 815.77km<sup>2</sup>의 면적에 100세이상 인구가 전국 1위인 장수마을로 반딧불이와 별을 생태관광 자원화하여 반딧불이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지역 농특산물 활성화 정책 등 관심사가 유사한 지자체로 인구정책과 공원조성 및 서남부권지역 균형발전 등에 상호 보완성이 있고 우호 증진 및 민간 교류 협력을 통한 우수시책 공유와 농특산물 판매촉진 등 지속적인 교류가 기대되는 등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보고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2. 2.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2. 5.

다. 상 정 일 자 :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2. 16. 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자치행정과장 우정숙)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2022. 1. 13.시행)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수원, 고양, 용인, 창원특례시가 공식 출범하였으며 4개 특례시를 회원으로 하는 협의기구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통해 100만 특례시 지위에 걸맞는 행·재정적 특례 권한 확보를 지속 추진중임.
- 이에 2025년 화성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기존 특례시와의 상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의 목표인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법령 및 제도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제1조(명칭)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 제3조(정의) 및 제5조(구성 및 자격)
  - 정회원: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수원, 고양, 용인, 창원)
  - 준회원: 인구 100만을 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 가능
- 제8조(위원의 임기) :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 제9조(회의 및 의결)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2회 소집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회의 시작,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제16조(경비부담) : 공동사무, 공동사업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공동부담
  - ※ 운영세칙 4조(경비부담) : 가입비 5천만원, 연회비 5천만원(단, 연회비는 가입 다음연도부터 납부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진)

-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공동의 현안을 협의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기존 특례시와 상호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위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2. 2.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2. 5.

다. 상 정 일 자 :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2. 16. 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징수과장 오추섭)

###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명시하고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 위촉위원을 구성하고 위원회 인원을 조정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에 과장급 이상 공무원 명시(안 제3조제3항 신설)
- 위원회 인원을 7명으로 조정(안 제8조제2항)
- 위원회 부위원장을 징수과장에서 위촉 위원 중 호선하는 사람으로 변경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 명시(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건)

-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직접적으로 징수에 기여하지 않은 관리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위촉직으로 두는 등 포상 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2. 2.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2. 5.

다. 상 정 일 자 :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2. 16. 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재산관리과장 김향겸)

### 가. 제안이유

- 해당 공유재산(우정읍 화산리 1105-75 외 2필지)은 행정목적 도로의 기능이 상실함에 따라 용도폐지된 토지로써 사유지에 둘러싸여 있어 활용가치가 낮아 매각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분대상 재산 목록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분대상 재산 목록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산표시			과표 또는 평가액	처분시기	처분사유	소관부서
	구분	소재지	수량 (면적)				
계	토지	우정읍 화산리 1105-75 외2필지	9,292	1,589,861	2024		
	건물	-	-	-	-		
	기타	-	-	-	-		
1	토지	우정읍 화산리 1105-75 외2필지	9,292	1,589,861	2024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재산관리과
	건물	-	-	-	-		
	기타	-	-	-	-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영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해당 토지가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시유재산으로 화성시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